

## □ 징계의 종류, 효력

### 인사규정 제44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

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견책은 해당 징계 등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,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승진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  2.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고 직무에 종사 하나, 승진을 제한하며 급여의 일정액을 감하는 것을 말하며, 해당기간 중 급여는 인사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  3.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, 징계처분의 대상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,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. 해당기간 중 급여는 보수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  4. 강등은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직급을 한단계 강등할 수 있으며, 이때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게 한다. 또한,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해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.<2022.03.30. 문구변경>
  5. 면직은 회사와 직원과의 고용 내지 채용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,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따르는 의원면직, 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으며,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면직시킬 수 없다.
- ①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근무가 가능한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본조 제1항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징계면직은 관련법령, 본 협약 또는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여 만든 사규 등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.
- ③ 금품·향응수수, 배임 및 공금을 횡령·유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사회봉사명령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명할 수 있다.

□ 징계의 양정기준

【별표 5】

**징계의 양정기준 (제59조제1항 관련)**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종류	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정도가 중하 고 중과실이거 나, 비위의 정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	비의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정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	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
1. 성실의무 위반 가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행위 나. 기타 위반행위		면직 강등-정직	정직-감봉 감봉	견책
2.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		강등-정직	감봉	견책
3. 기밀누설 금지 위반행위		면직	정직	감봉-견책
4.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	면직	정직	감봉	견책
5. 청렴의무 위반 행위		면직	정직	감봉-견책
6. 품위유지 의무위반행위		강등-정직	감봉	견책
7. 직장이탈행위		정직	감봉	견책
8. 질서문란행위		강등-정직	감봉	견책
9. 채용비위 행위		강등-정직	감봉	견책

※ 면 직 : 직원신분 박탈

강 등 : 1직급,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

정 직 : 1월~3월,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

감 봉 : 1월~3월

견 책 : 훈계조치